



KOLAS-R-005 : 2025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한국인정기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MOTIE, Korea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의 평가사,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실무자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건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 정의,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KOLAS-R-001) 제2조(용어의 정의),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제2조(용어의 정의), 「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KOLAS-R-004) 제2조(용어의 정의) 및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이 요령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KS Q ISO/IEC 17000”(적합성평가 - 용어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만, 연도표기가 없는 기준은 최신본을 적용한다.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법 제17조에 의거 인정기구의 인정제도에 필요한 평가사,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실무자 등의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교육·훈련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교육과정”이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인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교육·훈련하기 위하여 개설한 교과 과정을 말한다.
3. “교육생”이란 교육과정에 참가하는 개인을 말한다.
4. “교육업무”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기획·준비, 교육생 모집, 교육실시, 교육생평가, 수수료 교부 및 필기시험 결과를 교육생 개인에게 알리는 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판정활동”이란 인정기구의 장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생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의 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말한다.

6. “교육 경영시스템”이란 교육과정운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조직 구조, 절차, 과정 및 경영자원을 말한다.

제3조(인용표준 등) 다음 각 호의 표준과 지침은 이 요령에 인용됨으로써 이 요령의 일부를 구성하며, 최신본(추가사항 포함)을 적용한다.

1. ILAC-G3 Guidelines for Training Courses for Assessors Used by Accreditation Bodies
2. APAC-CBC-002 Guidelines on Training Courses for Assessors (Laboratories, Inspection Bodies, Reference Material Producers, Proficiency Testing Providers, Biobanks)
3. KS Q ISO/IEC 17011 적합성평가 - 적합성평가기관 인정기구의 요구사항
4. KS Q ISO 19011 경영시스템 심사 가이드라인
5. 인정기구의 장이 별도로 정한 해석 지침

제4조(지정기준)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제5장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인정기구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있어 신청기관이 신청한 범위에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제2장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

제5조(지정 신청) ① 신청기관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1. 기 지정신청에 따른 평가결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함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③ 교육과정은 평가사양성교육, 운영실무교육, 전문교육, 보수교육으로 구분되며, 신청기관은 교정, 시험, 검사, 표준물질생산, 메디컬시험, 숙련도시험운영, 생물자원은행운영, 제품인증, 검증 등 분야별로 상기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다.
- ④ 인정기구의 장은 각 교육과정을 적정하게 배정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⑤ 인정기구의 장은 서류검토 결과, 지정기준에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인정기구의 장이 신청서류를 반려한 때에는 그 사유와 문서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인정기구의 장은 신청기관이 신청 철회를 요청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반려한다. 다만, 평가시작 후 철회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평가를 중단하되 관계서류를 반려하지 않는다.

제6조(평가계획 수립) ① 인정기구의 장은 신청서류 검토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평가계획을 수립하며 평가개시 7일전까지 신청기관에게 평가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평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 장소 및 일정
2. 평가반 구성과 업무분장
3. 평가계획서에 대한 신청자 확인사항
4. 평가 수행을 위한 업무 협조사항

② 신청기관은 통보된 평가계획에 대하여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곤란 등의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일정 또는 평가반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정기구의 장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인정기구에 등록된 평가사로 평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④ 기타 평가반 구성, 평가일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을 준용한다.

제7조(평가 및 평가보고서) ① 평가반장은 신청기관의 제출내용과 지정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를 면담, 현장관찰, 교육실적 또는 시험실적 등 관련 기록 확인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활동은 시작회의, 현장평가, 부적합사항에 대한 동의, 평가결과의 정리, 종료회의 순으로 진행한다.

③ 평가반장은 시작회의 및 종료회의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작/종료회의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반장은 평가 종료 전에 평가반 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당일 평가결과에 대하여 최고경영자 및 관련 직원과 회의를 가져야 한다.

⑤ 평가반장은 현장평가 완료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정기구의 장과 신청기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평가 점검표
2.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부적합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3. 별지 제4호 서식에 종합평가보고서
4. 현장평가시 관찰사항(권고)

⑦ 신청기관은 현장평가시 지적 받은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평가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정기검사는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인정기구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신청기관이 취한 조치결과의 확인은 해당 평가사 또는 사무국 직원이 현장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제8조(평가 결과 심의)** ① 인정기구의 장은 평가보고서와 시정조치 결과를 교육훈련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교육훈련위원회는 평가보고서 및 시정조치 결과의 적합성과 함께 신청기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라 교육훈련위원회 위원장은 지정 승인, 조건부 지정, 지정 보류, 업무정지 또는 지정 불가(지정 취소) 중 선택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교육훈련위원회 심의결과가 지정불가로 최종 결정된 경우에는 인정기구의 장은 신청기관에게 지정이 불가함을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인정기구의 장은 평가보고서의 검토결과, 시정조치 기간 내에 시정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훈련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청기관에게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공고)** ① 인정기구의 장은 교육훈련 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고 제반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유효기간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3. 교육과정명 및 범위

-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4년으로 하며, 지정범위 추가시에는 기존의 잔여 유효기간으로 한다.
- ③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 제10조(수수료)** ① 신청기관은 인정기구의 장이 정하는 신청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필요한 비용의 산정은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KOLAS-R-003)을 준용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장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도 및 감독

제11조(정기검사) ① 인정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지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초 지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차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최초 지정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2차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재평가 후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정기검사 대상기관에 대한 평가계획 및 평가절차는 각각 제6조(평가계획 수립)와 제7조(평가 및 평가보고서)를 적용한다.

② 인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교육내용 등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불만사항 발생 시
2. 기타 인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재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7개월 이전에 재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재평가 절차는 최초 지정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3조(변경사항 신고 및 지정서 재교부)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인정기관의 장에게 1개월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관명, 대표자 또는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2. 조직 및 주요 경영진의 변경

3. 소재지 변경

4. 경영시스템에 관한 주요 정책의 변경

5.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정서(분실시는 제외)

2.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분실사유서

③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경영시스템의 유지 및 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부적합사항이 시정조치 될 때까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휴업·재개업·폐업 사실의 통지)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그 업무를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휴업·재개업·폐업통지서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재개업·폐업통지서를 제출받은 인정기구장은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휴업·재개업·폐업통지서 사실을 인정정보통합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해당 기관이 지정 유효기간 내에 휴업을 할 경우 1회에 최대 6개월내로 하며, 2회까지만 휴업을 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휴업 후 그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8호 서식과 휴업사유 소멸에 관한 증빙자료를 휴업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정기구의 장은 제4항에 의해 해당기관이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업무재개를 승인한다.

제15조(지정 취소 등) ① 인정기구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보완)를 요구할 수 있다.

1. 사후관리 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2. 품질기록을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보존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인정기구의 장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인정기구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업무정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의한 의견 제출은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정기구의 장은 제3항에 의한 의견제출 내용을 교육훈련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며, 교육훈련위원회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결정시 교육생 및 평가응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처분 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인정기구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지정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⑧ 인정기구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업무정지 후 그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경우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전문인력 양성기관 준수사항

제16조(실적 및 계획 보고)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연간 교육실적,

차년도 교육계획 및 문제 은행 현황을 매년 12월 초까지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를 구비하고 인정기구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법인으로 설립된 조직체임을 증명하는 문서
2. 정관
3. 교육업무 실시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문서
4. 재정적 기반에 관한 문서
5.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력을 갖춘 직원 및 교육과정의 강사를 충분히 고용 또는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문서 및 조직도
6. 전문인력 양성기관 내부의 책임, 권한, 보고의 분담과 계통을 나타내는 조직도 및 계통도
7. 해당되는 경우,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5장 교육과정 요구사항

제18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평가사양성교육, 운영실무교육, 전문교육, 보수교육 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은 각각 다음 각호와 같이 재구분할 수 있다.

1. 평가사양성교육 : 선임평가사양성교육, 신규평가사양성교육
2. 운영실무교육
 - 가. KS Q ISO/IEC 17025 운영실무교육
 - 나. KS Q ISO/IEC 17020 운영실무교육
 - 다. KS A ISO 17034 운영실무교육
 - 라. KS Q ISO 15189 운영실무교육
 - 마. KS Q ISO/IEC 17043 운영실무교육
 - 바. KS J ISO 20387 운영실무교육

- 사. KS Q ISO/IEC 17065 운영실무교육
 아. KS Q ISO/IEC 17029 운영실무교육
3. 전문교육 : 측정불확도추정교육, 정밀측정기술교육
4. 보수교육 : 평가사보수교육, 종사자보수교육
- ③ 평가사 및 KOLAS 공인기관 종사자의 필수 교육이수요건은 별표 2에 따른다.
- ④ 교육과정별 주요 교육내용은 별표 3에 따르며, 교육과정의 운영, 시간, 구성 등의 세부요구사항은 별표 4를 만족하여야 한다.
- ⑤ 보수교육을 제외한 교육과정 당 집합교육 교육생 수는 6명 이상 40명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인정기구 사무국의 승인을 득하여 교육생 수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평가사 양성과정의 교육생 수는 20명 이하로 한다.

제19조(교육생의 평가)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관찰평가를 위한 적절한 평가기준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교육생 개인에 대한 관찰평가를 교육과정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가. 출석, 교육생의 참가 태도
 - 나. 교육생이 작성한 문서에 나타난 이해정도(보수교육은 제외)
 4. 교육과정에 참여한 강사 또는 교육전담직원이 실시한 교육생의 관찰평가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여야 한다. 관찰평가에 합격한 교육생은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② 인정기구의 장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기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험문제는 총 배점 중 적어도 25 % 이상을 서술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시험문제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한 교육생만이 작성할 수 있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3. 답안지는 인정기구의 장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이 지명한 2명 이상의 채점위원이 채점을 한 후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여야 한다.(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담당 부서 인원은 채점위원에서 배제한다.)
4. 시험의 합격점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 단, 평가사양 성과점은 70점 이상으로 한다.
5. 시험에 불합격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재시험을 2년 이내 2회에 한하여 추가 응시할 수 있다. 교육생이 재시험에도 불합격한 경우에는 교육과정 전체를 다시 이수한 후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제20조(수료증과 합격증의 발급 및 사후조치) ① 인정기구의 장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와 수료 후 소정의 평가에 합격한 자에게 각각 수료증과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이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평가사 : 등록일로부터 매 3년마다 2회 이상
2.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및 실무자 : 운영실무교육 합격일 또는 직전 보수교육일로부터 매 3년마다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3. 평가사(평가사를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 또는 KOLAS 공인기관 종사자는 관련 교육 합격일 또는 직전 보수 교육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등록을 신청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등록 신청 또는 업무수행 전에 보수교육을 이수(평가사 2회, KOLAS 공인기관 종사자 1회)하여야 한다.

제21조(마이스터고, 대학 등 학교 교육과정의 인정) ① 인정기구의 장은 마이스터고, 대학 등에서 인정제도 운영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인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검토·심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이수 자격부여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고, 대학 등에서 수행하며, 수료증 및 합격증을 발급하고 이력관

리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요령의 재검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요령의 유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0657호, 2023.12.19.)에 의한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이수 등의 기타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별표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제4조 관련)

1. 일반요건

- 가. 교육 업무의 수행방침, 절차 및 그 운영은 차별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 나.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을 조건으로 부당한 재정적 또는 그 밖의 조건을 부과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교육내용이 이 기준에서 정한 교육과정 요건에 적합하며, 지속적으로 최신상태(온라인 교육 제공 포함)가 유지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조직

-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교육업무와 다른 업무를 구별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절차를 구비하여야 한다.
-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교육업무에 직접 관련되는 경영책임자 및 소속직원의 자격과 경험요건의 문서화
- 2)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한 권한, 책임 및 직무분담의 계통을 나타내는 조직도 규정(여기에는 교육활동에 책임을 가진 자와 판정활동에 책임을 가진 자와의 상호관계를 포함한다).
- 3) 교육활동과 판정(채점)활동의 구별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 수립
- 4) 직원 및 강사의 채용과 교육훈련 및 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수립

- 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과정의 공정한 운영을 통한 신뢰성 확보 및 교육업무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업무를 검토,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이에 대한 자격기준을 포함한 운영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1) 품질방침 실시상황에 대한 감독
- 2) 교육결과의 검토 및 개선방안 수립
- 3) 교육생 또는 교육신청자로부터의 불만 및 이의제기사항 처리에 대한 최종 검토

3. 경영시스템 운영

- 가. 경영시스템

-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최고경영자는 품질목표와 실천의지 표명을 포함한 품질방침을 규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하며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품질방침을 이해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수행할 업무의 종류, 범위 및 업무량에 적절한 경영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영시스템은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문서화된 품질매뉴얼, 절차서 및 지침서가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1) 내부심사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경영시스템이 이 요건을 만족하고 실행되고 있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내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내부심사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가 교육업무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 대해 최소한 연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1) 최고경영자에게 심사결과 보고
- (2) 적절한 시정조치 및 결과의 유효성 확인
- (3) 심사결과의 기록

2) 경영검토

가) 최고경영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시스템이 적절한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연 1회 이상 경영시스템의 운영상황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최고경영자는 조직의 모든 직원들이 품질방침을 이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다. 문서관리

-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 교육자료를 관리하는 절차를 확립·유지하여야 한다.
- 2) 이들 문서는 최초 발행, 개정 또는 변경하기 전에 적절히 위임받은 책임자가 심사하고 그 타당성을 승인하여야 한다.
- 3) 각 발간물마다 개정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전체 문서목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4) 이들 문서는 교육생을 포함한 관계자가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문서화하여 인정기구의 장 또는 교육생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교육업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권한을 규정한 문서
- 2) 교육과정의 구성 및 강사
- 3) 교육교재 및 교안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4) 교육성과를 평가하는 절차
- 5) 교육생 관찰평가 및 필기시험에 대한 합격/불합격의 기준
- 6) 교육과정 중의 관찰평가에는 합격하고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수료증의 발급절차 및 관찰평가 불합격자에 대한 처리절차
- 7)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재시험 안내 절차
- 8) 교육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마. 기록

-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업무가 이 기준 및 관련 법규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기록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이 기록 시스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가) 실시한 교육과정의 일시, 장소, 시간배분, 참가한 강사 및 교육생
주소와 성명, 광고를 한 경우 광고매체명과 일자, 사용된 교재의
관리번호
 - 나) 관찰평가 및 필기시험의 합격/불합격을 기재한 과정별 교육생의
명부(재시험자 명부, 점수 포함)
 - 다) 합격증/수료증의 교부에 대한 기록
 - 라) 관찰평가서 및 관련요약서
-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계약, 법률 기타 업무에 필요한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하는 방침과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기록을 유지하는 경우 이 기준 라. 와 일치하는 방침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3) 기록은 한글로 하드 카피 또는 전자매체 등의 형태로 기록될 수 있으나
1)의 기록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바. 기밀유지

-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관련업무 과정에서 입수된 모든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생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교육생에 대한
필기시험 및 관찰평가 결과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정기구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법에 따라 기밀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제공될 정보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 불만처리 및 설문조사

-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생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관계되는 자가 교육과정 중에 제기한 이의, 불만 및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교육과정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가) 교육생이 교육과정에 제기한 이의, 불만 및 분쟁에 대한 기록과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 할 것
 - 나) 적절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할 것

4. 전문인력 양성기관 직원 및 강사의 자격요건

가. 일반요건

- 1) 교육업무에 관계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직원 및 강사에 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한 내용 외에 교육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요건 및 평가경험 등을 포함하는 자격기준을 정하고 그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직원 및 강사에게 직무와 책임을 규정한 명확한 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침서는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직원 및 강사의 교육업무에 관한 교육·훈련, 평가 및 교육강사 경험에 대한 정보를 최신 상태로 기록·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 4) 특히, 소속된 교육 강사(계약된 교육 강사 포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는 절차를 정하고 최신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가) 이름, 주소, 부서, 직위
 - 나) 교육훈련 이수사항 및 전문 자격
 - 다) 실무경력 및 평가 경력
 - 라) 교육훈련 실시 경력
 - 마) 기록 일자

나. 강사진 구성

-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과정별 전임강사를 2명(정밀측정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 이상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강사의 교육수행능력 확보를 위해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법 등으로 강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각 교육과정의 강사는 가.에 따라 구성된 교육과정에 대한 경력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강사 중 주강사는 교육과정을 계획, 관리, 실시할 능력을 갖추고, 보조강사는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참석한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단, 평가사과정의 주강사는 선임평가사이어야 한다.

- 3) 교육생이 9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 이상의 강사가(전임강사 포함) 운영하여야 하며, 2명의 강사는 연수의 전 과정 동안 강의 또는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생이 9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의 전임강사가 운영할 수 있다.

5. 공평성 관리

-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업무와 관련된 결정 및 결과의 승인에 대해 책임 및 권한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위임할 수 없다.
-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공평성 관리를 위한 조직구조, 방침 및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하며, 기관의 활동이 공평하게 수행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최고경영자는 교육활동에 대한 공평성을 선언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공평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해상충을 관리하며, 교육 활동의 객관성을 보장한다는 선언문을 보유하고 별도의 요청이 없이도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 활동의 평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공평성을 저해하는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 압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공평성에 대한 위협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교육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분석, 문서화 및 제거 또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 마.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공평성을 보호하는 조직을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이해관계자의 균등한 참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별표 2]

평가사 및 종사자의 필수 교육이수요건(제18조 관련)

1. 평가사

대상자 교육과정	교정, 시험, 검사, 메디컬시험	숙련도시험, 표준물질생산	생물자원은행	제품인증	검증
해당분야 평가사양성교육	○	○	○	○	○
시험, 교정, 메디컬시험 (택 1) 평가사양성교육		○	○		
측정불확도 추정	○	○			
평가사보수교육	○	○	○	○	○

* 숙련도시험, 표준물질생산, 생물자원은행 교육과정의 경우 시험, 교정, 메디컬시험 중 어느 하나의 평가사양성교육에 대한 사전이수 및 합격 필요

2. 종사자

대상자 교육과정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표준 물질 생산 기관			메디컬 시험 기관			숙련도 시험 운영 기관			생물자원 은행			제품 인증기관			검증기관		
		품질 책임 자	기술 책임 자	실무 자	품질 책임 자	기술 책임 자	실무 자	품질 책임 자	기술 책임 자	실무 자	품질 책임 자	기술 책임 자	실무 자	품질 책임 자	기술 책임 자	실무 자	품질 책임 자	기술 책임 자	실무 자	품질 책임 자	기술 책임 자	실무 자	품질 책임 자	기술 책임 자	실무 자	품질 책임 자	기술 책임 자	실무 자
운 영 실 무 교 육	KS Q ISO/IEC 17025 운영실무교육	○	○	○	○	○	○																					
	KS Q ISO/IEC 17020 운영실무교육							○	○	○																		
	KS A ISO 17034 운영실무교육										○	○	○															
	KS Q ISO 15189 운영실무교육												○	○	○													
	KS Q ISO/IEC 17043 운영실무교육															○	○	○										
	KS J ISO 20387 운영실무교육																		○	○	○							
	KS Q ISO/IEC 17065 운영실무교육																					○	○	○				
	KS Q ISO/IEC 17029 운영실무교육																								○	○	○	
전 문 교 육	측정불확도추정 교육		○	○		○	○		○			○	○		○	○		○	○									
	정밀측정교육			○																								
종사자보수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별표 3]

교육과정별 주요 교육내용(제18조 관련)

과 정 명		주 요 내 용
평가사 양성교육	선임평가사 양성교육	- 적합성평가제도 최신동향 - 효과적인 문서심사 수행 - 평가반 리딩 및 갈등 관리 - 현장평가 운영관리 사례 분석 및 실습 - 보고서 작성 및 시정조치 확인 - 공정, 청렴 등 윤리 관련 교육
	신규평가사 양성교육	- ILAC-G3(인정기구에서 활용하는 평가사 교육 지침) 및 APAC CBC-002(평가사 교육과정 지침)의 교육프로그램 반영 - 인정제도 소개 - 적합성평가제도의 국제동향 - 각 인정스킴 별 인정기준 및 해석 - 평가기법 및 실습 - 측정소급성 개념 및 적용 - 측정불확도 - 숙련도 시험에 대한 정의, 운영 및 사후관리 - 평가사 자격기준 및 등록절차 - KS Q ISO/IEC 17011 6.1.2에서 요구하는 적격성 요구사항 - 공정, 청렴 등 윤리 관련 교육
운 영 실 무 교 육	KS Q ISO/IEC 17025 운영실무교육 (교정기관)	- KOLAS 인정제도 및 국제적합성평가 시스템 개요 - KOLAS-R-002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 KOLAS-R-002 제4조에 따른 평가 및 인정 기준 - 공정, 청렴 등 윤리 관련 교육
	KS Q ISO/IEC 17025 운영실무교육 (시험기관)	- KOLAS 인정제도 및 국제적합성평가 시스템 개요 - KOLAS-R-002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 KOLAS-R-002 제4조에 따른 평가 및 인정 기준 - 공정, 청렴 등 윤리 관련 교육
	KS Q ISO/IEC 17020 운영실무교육 (검사기관)	- KOLAS 인정제도 및 국제적합성평가 시스템 개요 - KOLAS-R-002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 KOLAS-R-002 제4조에 따른 평가 및 인정 기준 - 샘플링 기법 - 공정, 청렴 등 윤리 관련 교육
	KS A ISO 17034 운영실무교육 (표준물질생산기관)	- KOLAS 인정제도 및 국제적합성평가 시스템 개요 - KOLAS-R-002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 KOLAS-R-002 제4조에 따른 평가 및 인정 기준 - KS A ISO Guide 31 : 표준물질 - 인증서, 라벨 및 첨부 문서의 내용 - KS A ISO Guide 35 : 표준물질 - 균질성 및 안정성의 평가와 특성화에 관한 가이드선스 - 공정, 청렴 등 윤리 관련 교육
	KS Q ISO 15189 운영실무교육 (메디컬시험기관)	- KOLAS 인정제도 및 국제적합성평가 시스템 개요 - KOLAS-R-002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 KOLAS-R-002 제4조에 따른 평가 및 인정 기준 - 공정, 청렴 등 윤리 관련 교육
	KS Q ISO/IEC 17043 운영실무교육	- KOLAS 인정제도 및 국제적합성평가 시스템 개요 - KOLAS-R-002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과 정 명		주 요 내 용
	(숙련도시험운영기관)	- KOLAS-R-002 제4조에 따른 평가 및 인정 기준 - KOLAS-R-007 KOLAS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 KS Q ISO 13528 : 시험소간 비교 숙련도시험용 통계적 방법 - 공정, 청렴 등 윤리 관련 교육
	KS J ISO 20387 운영실무교육 (생물자원은행)	- KOLAS 인정제도 및 국제적합성평가 시스템 개요 - KOLAS-R-002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 KOLAS-R-002 제4조에 따른 평가 및 인정 기준 - ISO 21899 : Biotechnology - Biobanking -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validation and verification of processing methods for biological material in biobanks - 공정, 청렴 등 윤리 관련 교육
	KS Q ISO/IEC 17065 운영실무교육 (제품인증기관)	- KOLAS 인정제도 및 국제적합성평가 시스템 개요 - KOLAS-R-002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 KOLAS-R-002 제4조에 따른 평가 및 인정 기준 - KS Q ISO 19011 : 경영시스템 심사 가이드라인 - KS Q ISO/IEC 17067 : 제품인증 기본사항 및 제품인증스킴 지침 - KS Q ISO/IEC 17021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기관 요구사항 - 공정, 청렴 등 윤리 관련 교육
	KS Q ISO/IEC 17029 운영실무교육 (검증기관)	- KOLAS 인정제도 및 국제적합성평가 시스템 개요 - KOLAS-R-002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 KOLAS-R-002 제4조에 따른 평가 및 인정 기준 - 공정, 청렴 등 윤리 관련 교육
전문 교육	측정불확도추정교육	- 통계이론 - KOLAS-G-001 측정결과의 불확도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 - KOLAS-G-004 시험분야 측정불확도 추정에 관한 지침 - KS Q ISO/IEC Guide 98-3 : 측정불확도 - 제3부: 측정불확도 표현지침 - 불확도 추정 및 사례분석 - 이론 : 50 %, 실습 : 50 %
	정밀측정기술교육 (교정기관)	- 국제단위계(SI) 및 올바른 단위 사용 - 해당 분야 교정 개론(주요 측정기기, 측정소급성, 측정불확도 추정) - 주요 측정기별 교정절차 - 주요 측정기별 교정 실습 및 사례연구(50% 이상) ※ KOLAS-R-002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1의 KOLAS 공인교정기관 인정분야 중분류에 따라 운영하되, 유사한 교육과정은 통합 편성
보수 교육	평가사보수교육	- 최신 인정기준 및 기술사항 등 정보공유 및 토의 - 최신 평가기법 및 사례 연구 등 - 공정, 청렴 등 윤리 관련 교육
	종사자보수교육	- 적합성평가체제 및 국제동향 - 인정기준 및 지침의 최신내용 해설 등 - 공정, 청렴 등 윤리 관련 교육

■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별표 4]

교육시간 및 교육과정의 구성(제18조 관련)

1. 교육시간 및 교육과정의 구성

가. 교육과정에는 다음 사항을 위한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1) 교육생 소개
- 2) 교육과정의 형태·진행방법, 행정적 준비사항
 - 가) 교육생이 주의해야 할 사항
 - 나) 교육생 평가방법 등

나. 강의, 토의, 분임조활동·사례연구, 실습등을 포함한 총 교육시간은 평가사 양성교육의 경우 5일에 걸쳐 37시간 이상(단, 숙련도시험·표준물질생산·생물자원은행 분야 신규평가사양성교육은 8시간 이상, 선임평가사양성교육은 18시간 이상), 운영실무교육, 전문교육은 과정별 적정한 시간으로 운영하되 최소 18시간 이상으로 하며, 보수교육은 5시간 이내로 한다. 단, 교육과정에 통역자가 활용될 경우 교육시간은 동시통역일 때는 25 %까지, 순차통역일 때는 40 %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다. 식사, 휴식시간 또는 자유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은 교육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 평가사 양성교육의 경우, 각 교육생이 강의활동의 일환인 워크숍, 사례연구, 평가원 역할분담 연기 및 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활동에 총 교육시간 중 최소 30 % 이상을 할당해야 한다.

마. 교육과정의 구성 중 사례연구는 해당 요건에 대한 운영 및 기술요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바. 총 교육시간 중 1/3까지 조 편성 및 강의장 밖에서 실시되는 활동을 위해 소요할 수 있다. 강의장 밖에서의 활동에는 소그룹 활동과 공식보고서 작성작업이 해당된다.

사. 교육과정은 체계적이어야 하며, 특히 평가사 교육과정인 경우 각 교육생이 실제 평가상황에서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아. 총 교육시간의 10 % 이내에서 강사는 교육진행에 필요한 보조물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조물은 교육용 비디오 또는 교육생의 교육활동을 기록하고 검토하기 위해 교육과정 중에 제작된 비디오일 수 있다.

2. 교재 및 교육시설

-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에게 관련된 교육내용을 기재한 교재 및 사례연구, 교육내용 보충을 위한 부교재를 제공하여야 한다.
- 나. 교재 및 부교재는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며, 교육생이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생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온라인 교육시설 포함), 분임토의실 및 교육에 활용되는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별지 제1호서식]

시작/종료회의 참석자 명단

기 관 명				회의장소		
구 분	시작회의			종료회의		
	일자 :			일자 :		
참 석 자	소속 또는 직책 ¹⁾	성 명	서 명	소속 또는 직책 ¹⁾	성 명	서 명
신 청 기 관						
평 가 팀						
관 찰 자						

■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별지 제2호서식]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평가 점검표			
1. 신청기관 개요 ○ 기관명 : ○ 대표자 : ○ 주 소 : 2. 신청분야 : 3. 평가일시 : 4. 점검표 확인			
구 분	소 속	성 명	서명
평가반원			
평가반장			

항 목	세 부 요 건	평가결과	
		적합	부적합
1. 일반요건	가. 교육업무의 수행방침 및 절차 나. 교육생에 대한 조건 및 비차별성 다. 교육내용의 최신화		
2. 조직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법적 지위 나. 기타업무와의 독립성 다. 조직운영 일반 1) 경영책임자 및 소속직원의 자격과 경험 2) 직무분담 및 조직계통도 3) 교육활동과 판정활동의 구분 및 절차 4) 직원 및 강사의 교육훈련 및 업무능력 라. 운영위원회 운영 1) 품질방침 실시상황에 대한 감독 2) 교육결과의 검토 및 개선방안 수립 3) 불만 및 이의 제기사항 처리		
3. 경영 시스템 운영	가. 경영시스템 1) 최고경영자의 의지 및 품질방침 2) 경영시스템 문서화 나.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1) 내부심사의 적절성 2) 경영검토의 적절성 다. 문서관리 1) 교육업무 문서 및 자료의 관리 2) 문서의 제개정 절차 3) 문서목록 보유 및 관리 4) 문서의 이용		

항 목	세 부 요 건	평가결과	
		적합	부적합
3. 경영 시스템 운영	라. 교육과정 1) 교육업무 수행의 근거의 규정 2) 교육과정의 구성 및 강사 3) 교육교재 및 교안의 유지관리 4) 교육성과의 평가 5) 합격/불합격 기준의 적절성 6) 수료증 발급절차 7) 불합격자에 대한 처리 절차 8) 교육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마. 기록 1) 교육업무 이행에 관한 기록 2) 기록유지에 관한 방침과 절차 3) 기록보존 바. 기밀유지 1) 입수된 모든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 2) 교육생의 필기시험 및 관찰평가 결과의 제공 3) 기밀정보 공개시 해당 개인에 통보 사. 불만처리 및 설문조사 1) 이의, 불만 등의 처리를 위한 절차 2) 이의, 불만내용의 처리결과 및 내용		
4. 전문인력 양성기관 직원 및 강사의 자격요건	가. 일반요건 1) 교육훈련 요건 및 자격기준 2) 직원 및 강사의 직무와 책임 3) 직원 및 강사의 정보 관리 4) 교육강사의 최신기록 유지 나. 강사진 구성 1) 최소 전임강사 보유 및 강의능력 평가 2) 강사의 자질 및 능력 3) 강사구성 요건		
5. 공정성 관리	가. 업무와 관련된 결정 및 결과의 승인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을 보유 나. 공정성 관리를 위한 조직구조, 방침, 절차의 문서화 및 기관 활동의 공정성 보장 다. 공정성을 저해하는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 압력 미허용 라. 공정성에 대한 위협을 지속적으로 파악 및 교 육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분 석, 문서화하고 이를 제거 또는 최소화 마. 공정성을 보호하는 조직구조 확보		

■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별지 제3호서식]

부 적 합 보 고 서			발행번호
			/
신청기관		평가일자	
평가항목		해당기준	
<부적합 내용>불임 자료 : ☐ 없음 ☐ 있음(매)			
평가사 성명 (서명)		신청기관 확인	
평가반장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시정조치 계획>			
완료예정일:		작성자 서명:	
<조치결과 확인>불임 자료: ☐ 없음 ☐ 있음(매)			
확인(평가사) 성명		일자: (서명)	

■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별지 제4호서식]

종 합 평 가 보 고 서	
신청기관	
평가구분	
인정분야	
평가일정	년 월 일 ~ 월 일
평가의견	붙임자료 : ☐ 있음(매) ☐ 없음
이 보고서는 KOLAS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에 따라 신청기관의 경영시스템 및 운영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평가반장과 평가반원이 전원 합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신청자(대표자)는 이 평가요약보고서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전문인력양성기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평가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 평가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2. 피 평가기관과의 어떠한 상업적 이해 관계나 기타 압력을 받은바 없다. 3.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이해관계자 및 인정기구장의 동의 없이는 누설하지 않는다.	

4. 피 평가기관 또는 이해 당사자로부터의 금품 수수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5. 평가반은 피 평가기관에 대하여 최근 5년 동안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지도 또는 자문행위를 한바 없다.

상기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민·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평가반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평가반장	서명		
지정신청자	서명		

■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별지 제5호서식]

심 의 결 과 통 보 서

위원회명 :

심의안건:

심의회결과

☐지정승인 ☐조건부지정 ☐업무정지 ☐지정불가(취소) ☐지정보류

조건/사유 :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이
의
의

위원장 : (서명)

■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별지 제6호서식]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
기관명 :
대표자 :
소재지 :
유효기간 :
지정분야 및 범위 :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에 의
거 위와 같이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한국인정기구장

직인

■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별지 제7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 변경사항 신고서
[]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신청) 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신청)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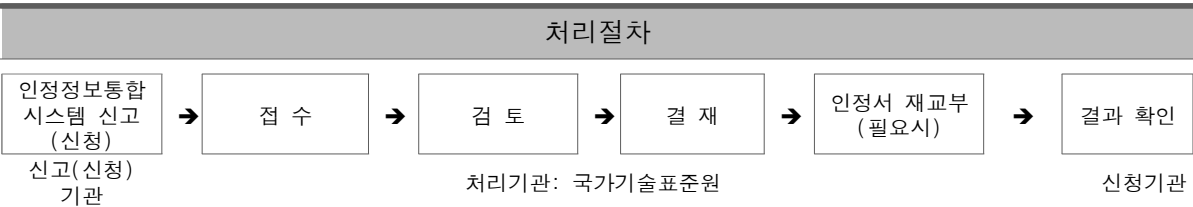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인정기구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 신고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교부 신청의 경우 가. 지정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분실·훼손사유서 * 모든 자료와 문서는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20,000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별지 제8호서식]

[] 휴업 통지서

전문인력 양성기관 [] 폐업 통지서

[] 재개업 통지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신고(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법인 소재지 : 교육장 소재지 :	
통지 내용 및 사유		
휴업의 경우 그 기간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인정기구장 귀하

첨부서류	1.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폐업인 경우)	없음
------	--------------------------------	----

처리절차

인정정보통합
시스템 신고
(신청)
신고(신청)
기관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공고

→

결과 확인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신청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한국인정기구 (KOLAS)

페이지 (33)/(33)